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MP. 010-4373-0518
제목: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10월 27일, '비정규직, 정리하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발표
전송일자:	2012. 10. 27.(토)
전송매수:	총 5매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10월 27일, '비정규직, 정리하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 10월 27일(토) 오후 5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1천만 선언운동, 10만 촛불행진'이 진행예정입니다.
3.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1천만 선언운동'에 함께 하기 위하여 10월 27일 '비정규직, 정리하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이하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법률가 선언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선언문을 통하여 ①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 ② 간접고용은 금지, ③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④ 정리하고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5. 이번 '법률가선언'에는 변호사 160명, 노무사 127명, 법학교수 148명 등 법률가 총 435인이 참여하였습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보도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1.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문>

별첨2.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참여자 명단 : 총 435인>

별첨1.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문>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문

2012년 현재, 상시적 고용불안과 차별, 무권리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대표적 부정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파견·용역·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마저 가로막힌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하는 자에게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상시적 업무에는 직접고용·상시고용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노동법의 기초이자 경제민주화의 토대이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지난 십 수년간 피땀을 흘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우리 법률가들은 19대 국회가 다음과 같은 우선적 입법 요구를 연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들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 및 가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청, 도급업체 등이 파견, 용역,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자는 누구든지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노조법도 원청 사용자들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간접고용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며 중간착취는 철폐되어야 한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중간착취를 합법화해주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법이다. 이러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간접고용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실질적 사용자가 임금·노동조건·고용 등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안은 외주화·사내하청을 확대하고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할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해 주자는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촉구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고용·직접고용 등 정규직화를 하는 것을 노동법의 원칙으로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직접고용의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을 금지시키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상시고용 및 직접고용을 하는 등 정규직화 원칙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사람을 죽이는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부당한 정리해고를 통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목도하고 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정리해고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제의 개폐를 위한 조속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27일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참여자 435인 일동

별첨2.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참여자 명단 : 총 435인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참여자 명단 : 총 435인

■ 변호사 (민변 장주영 회장 포함 160명)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일석 고재환 고지환 구인호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경호 김기남 김기덕 김남준 김다섭 김도형 김동현 김명진 김상은 김석준 김선수 김선영 김성진 김연수 김영기 김외숙 김유정 김은경 김은산 김인숙 김장식 김재왕 김정아 김종귀 김종보 김종보 김종수 김주혜 김진국 김진형 김철호 김태욱 김하나 김한주 김해영 김행선 김화철 노성진 류민희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 훈 박은영 박재홍 박주민 박치현 박현지 방정환 백신옥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설창일 성창익 소삼영 송상교 송영섭 신선아 신영훈 신인수 신지현 안시현 양지훈 여연심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위은진 유창진 윤인섭 윤지영 이 혁 이강혁 이경우 이새나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유정 이재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정환 이제일 이종호 이주현 이창현 이학준 이혜정 임선아 임성택 장동환 장석대 장숙경 장유식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홍록 전영식 정기호 정대현 정병욱 정소연 정은영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조세화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일영 조현주 조혜인 좌세준 채영호 천낙봉 천정배 천지선 최규선 최성주 최용근 최용석 최종환 최현오 탁경국 한가람 한경수 한명욱 한택근 황민호

■ 노무사 (노노모 이오표 회장 포함 127명)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을영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민 김경희 김기범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영 김민철 김민호 김성진 김성호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요한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성우 박윤섭 박윤진 박재홍 박종남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원표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유승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이경호 이기중 이동우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종란 이종인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임치용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하운성 하태현 한태현 허운진 황규수 황철희

■ 법학교수 (민주법연 김인재 회장 포함 148명)

강경선 강경운 강성태 강재규 강현주 고영남 공순옥 권혁일 권혜령 김 욱 김계순 김광수 김광이 김노원 김도균 김도현 김명연 김민배 김범준 김상준 김상희 김선광 김성운 김세훈 김소진 김승환 김엘림 김영옥 김용호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정환 김제완 김종서 김진욱 김태호 김한균 김홍근 김홍영 김희성 노진석 문병효 문준영 박광수 박민제 박병도 박병섭 박상식 박승룡 박은정 박제성 박지순 박지현 박진용 박태현 박흥규 박환순 박희호 백운조 백좌흠 서 현 서경석 석인선 선정원 손동원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석운 신옥주 신인령 신정훈 심재진 안 진 양승엽 양영철 엄순영 오길영 오동석 오병두 오승규 유선호 윤신승 윤애림 윤영철 이경주 이계수 이동승 이상명 이상수 이수근 이수진 이영남 이용인 이원우 이원희 이은희 이재승 이준형 이진수 이창호 이충은 이한규 이호영 이호중 임미원 임재홍 임태근 임호풍 장덕조 전영주 전윤구 전종익 전진희 전형배 정경수 정병덕 정영선 정지운 정태욱 제철웅 조 국 조경배 조광희 조백기 조상균 조승현 조시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진명화 차성민 최관호 최미향 최영진 최은주 최정학 최철영 최홍엽 추창원 한상희 허 호 허익수 홍기원 황보명국 황진선